

자치단체간 협력과 공동발전

-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

김 용 응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자치단체간 협력과 공동발전

-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

1. 머리말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행정구역 중심의 행정 및 개발체제의 강화로 자원의 중복적 이용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김용웅, 2000 : 34).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행에 젖어 협력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역경제권을 국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 국토기본법(제3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9조 2항)은 “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자체

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은 개별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절감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개발사업 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효율성과 사업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파트너 선정은 ① 문화적 일치성 ② 전략적 보완성 ③ 협력의지 등을 들 수 있음.
- 충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역사·문화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보유자원도 상호보완적이어서, 협력의지만 있다면 이상적인 협력·제휴파트너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국가발전의 기본틀이 광역경제권을 지향하는 등 광역적 협력 및 정책적 공조사안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도 협력·제휴에 대한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자체간의 공동발전 및 협력프로그램은 지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기반을 갖추고 있다.
- EU에서는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으로 INTERREG III을 운

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자체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간 협력법(Interregional Cooperation Ar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충남-전북간에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가 주도하는 형태로 지역간 협력과 공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협력사업이 개별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교류협력이 중단되어 지속적 교류협력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는 개별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행정 각영역간, 성공사례의 공유, 연구원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몇 가지 협력 및 제휴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충남·전북간 협력현황 분석

1) 현황

충남·전북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화합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2002년 10월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의 주요기능은 충남·전북 각 자치단체간 협력·제휴활동, 충남·전북 도정 각 분야별 정책공조 강화, 충남·전북 각 지역 이해 관계사업 협의, 지역주민 상호간 친선도

모 및 이해증진 등이다.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 참여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수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4개시군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개시군

충남·전북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 지역간 교류협력회의는 2004년 현재, 제4회까지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협의된 안건은 제1회 21건, 제3회 4건, 제4회 6건 등 총31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

협의안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 및 재정, 도로·교통시설 설치, 지역경제·개발, 물관리 및 환경보전의 순이며, 혐오시설 설치·운영, 공공시설 설치·운영,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은 실적이 없다.

<표 2> 협력사업 유형별 대상사업

협력사업유형	대 상 사 업	건 수
도로·교통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고속철도 노선분기점 관련 공동대응 • 국도 77호 노선변경 및 군장대교 건설 • 충남-전북간 국도확·포장사업 공동대응 • 문주 내도앞섬-금산 방우리간 도로확·포장 • 주천 무릉-남이 대양 도로개설 • 군산-서천간 국도 4호선 도로연결 • 남이 건천리-운주 산북리간 도로 확·포장 	7
지역경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활성화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 공동대응 • Package관광상품 및 관광벨트 추진 •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 • 배티재 주변 공동개발 	5
친선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류공연 • 민간차원의 협력·제휴 증진 	2
물관리 및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하구둑 쓰레기처리 공동대처 • 금강수계 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 • 금강하구 철새서식 환경조성 • 용담댐 물 상수원 확보 및 물관리 공동대처 • 탐정호 유입쓰레기 저감방안 공동추진 	5
행사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마라톤대회 공동개회 • 군산철새축제 	2
일반행정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 및 진화협조체제 확립 •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활성화 • 도계지역 시내·농어촌 버스 운행확대 • 공동조업수역 조정 및 어업질서 협력 • 악성전염병 공동대처 • 꽃게 금어기 규정 개정 • 야생조수 보호 공동대처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공조체제 구축 • 부여지역 문화예술축제 참가협조 •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공동노력 • 2004군산자동차부품 엑스포 참가협조 	11

(1) 협의안건별 주요협력내용

□ 중앙정부 건의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협력내용
호남고속철도 노선분기점 관련 공동대응(충남·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직결노선 건설을 전제한 천안분기 신설을 위해 전북과 충남이 협력하여 공동대응 방안 마련 - 양도간 : 건교부 및 각계에 강력한 건의 등 - 양도도민·단체간: 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 등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산업단지 조성 등에 맞추어 조기착수되도록 충청도와 협력, 중앙부처 공동건의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추진 건의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활성화(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금강하구둑 쓰레기 처리공동대처(군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관리기관(농어촌기반공사)에서 수거, 자치단체에서 지원 • 쓰레기 처리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 생활쓰레기가 90% 이상으로 대청소 실시 필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공동대응(충남, 익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예산 확보 공동대응 - 중앙부처를 상대로 2005년 사업완료에 필요한 금액 지원요구 - 국회를 상대로 자치단체 요구액 반영 노력 • 민간자본 유치 여건 개선 마련 - 2005년까지 기반시설 및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완료 • 백제문화 위상제고 노력 - 백제문화고증연구, 세미나, 학술회의 등 공동·교차계획 - 백제문화연구 전문가, 대학의 공동협력체 구성
금강수계 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진안,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규제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비율 상향조정을 공동건의 - 운영비 지원기준 : 현재 70%에서 100%로 조정 • 금강수계법 시행으로 자치단체 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관리인력(행정·환경·토목직)지원을 중앙부처에 공동요청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공동대응(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국도의 조기 확·포장 추진 노력 - 양도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 상호정보요구 등 원활한 협력체제 유지
무주(내도 앞섬)~금산(방우리)간 도로 확·포장(무주,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 양 자치단체가 금강수계 치수사업비를 우선 지원토록 건의 • 주생활권이 무주인 금산군 방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양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조 협조

□ 도 차원의 협력·제휴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p>Package관광상품 및 관광벨트 추진 (논산, 익산, 금산, 부여, 진안, 무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관광상품 공동개발·연계 -금산 인삼시장, 무주 덕유산 리조트, 진안 마이산 용담댐 등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상호 협력개발 •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추진 -논산 계백·견훤묘역, 부여 부소산 왕릉, 익산 미륵사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
<p>금강 건강마라톤 대회 (군산, 익산, 서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에 마라톤대회 개최 가능여부 진단의뢰 -거리별(5km, 10km, 하프마라톤, 풀코스마라톤)최적코스 선정 • 대한체육회, 육상연맹, 언론사, 민간단체 및 동호회 등 마라톤 관련 기관·단체의 폭넓은 참여 유도 •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후 예산반영 등 행사개최 공동준비
<p>문화예술교류공연 (충남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예술단 및 민간단체간 교류공연 추진방안 공동협의 -상호관계기관·단체간 협의체를 구성, 세부사항 협의추진 (공연종류, 횟수, 장소, 방법, 내용, 비용분담 등) -음악, 무용, 연극, 회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민관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공동노력 강화 • 정기적인 교차공연 외에 각종 대회·행사시 초청공연, 협연 등 실시 • 백제문화 향기를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개최 및 연구 등 공동실시
<p>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 (충청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둔산 개발에 필요한 국비지원 요청시 공동대응 • 타지역 등산로, 공원시설 등도 안내표지판·팸플릿에 기재 -대둔산 등산객들에게 전지역 탐방을 위한 편의제공 • 안내표지판 및 안내팸플릿 등 제작시 공동제작·활용 • 각 지역별 하산로의 연계교통망 구축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등 추진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p>금강하구 철새서식환경 조성 (충남, 군산, 서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보호 및 주민피해 방지대책 공동수립 추진 - 하천부지, 공한지를 활용한 철새 먹이농장 조성 -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갈대밭 등 조성 • 철새관련 공동학술연구 - 철새 서식지, 먹이, 환경 및 종·개체 등 공동조사 • 멸종위기 조류 등 밀렵행위 합동 단속 - 밀렵감시반 합동편성·단속으로 철새 서식환경 조성 • 철새탐조 등 생태관광을 통한 관광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
<p>산불예방 및 진화협조체제 확립 (논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기관간 산불방지 공동협의회 구성·운영 정례화 - 사전 산불예방 공조체제유지 및 초동 진화태세 확립으로 자원과 인명피해 최소화 • 인접지역간 마을단위 신고망 및 진화대 협조체제 유지 - 인접자치단체간 상호협조체제 및 일체감 형성 • 인접지역간 산불 취약지구 및 특별관리자 등 상호정보교환을 통한 상호 감시활동체제 유지 및 강화 - 산림자원보호 및 산불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p>악성 가축전염병 공동대처 (군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가축전염병 발생시 인접 시 군간 주요도로 합동방역대 설치 등 공동방역체제 구성 • 방역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사전정보교환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발생시 공동대처방안 모색
<p>민간차원의 협력·제휴증진 (충남, 전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간 분야별 민간기관·단체·협회의 협력·제휴강화 - 경제분야 : 상공회의소,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농어민단체 등 - 사회분야 : YMCA, JC, 로타리클럽,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본부 등 - 문화분야 : 예총, 생활체육협의회, 시민문화발전모임,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등 - 환경분야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그린훼밀리,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본부 등 - 학술분야 : 국공립 및 사립대학, 연구소 등 <p>⇒ 민간차원에서 교류협력이 증진되도록 지원방안 모색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협력 유도</p>

□ 시·군 차원의 협력·제휴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활성화 (군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연안의 환경보존 대책, 철새보호방안 등 양 시군의 공동문제를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공동해결방안 모색 • 각종 행사교류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하고 상호공동발전을 도모
도계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행 확대(완주, 진안, 논산, 금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조합 협약에 의거 운행중인 버스노선이 상호 도계지역을 넘어 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협조(해당시군간) • 관련업체 및 시군간 협의 난항시 도간 조정협의 추진
배티재 주변공동개발 (완주,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계지역 상징물(안내판, 화합기념비 등) 공동제작 설치 • 배티재 전망대 설치 • 휴게시설, 공원(화단) 조성 • 충남, 전북 특산품 판매장 설치운영
주천 무릉~남이 대양 도로개설 (진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발주의 경우 경계가지 양 도에서 책임추진 • 공사추진일정, 설계, 타당성 조사 등에 실무협의추진 (진안군, 금산군)

□ 지속검토·추진사항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용담댐 물상수원 확보 및 물관리 공동대처(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담댐 물 상수원관리 양도간 지속적인 협의·조정실시 • 금산군 상수도 취수원 녹지방지대책 협조요청 • 홍수기 용담댐 물관리 : 종합방재정보시스템 공동구축 협의
공동조업수역 조정 및 어업질서 협력 (군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분별한 어구설치 예방을 위한 어구설치 제한기준 마련 -수산자원 고갈방지를 위해 관할해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화 등 수산종묘의 지속적인 방류 등 공동추진을 통해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한 어업질서를 확립, 고동이행 • 장기적으로는 양도 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 해상의 일정구간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 해상도계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검토·협의

(2) 협의안건 주요추진 내용

□ 중앙정부 건의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추진내용
호남고속철도 노선분기점 관련 공동대응(충남·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및 전북이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조기확정 건의 - 건설교통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분기역 위치는 신행정수도이전과 연계검토(대통령업무보고시)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확충 5개년계획에 군장대교 포함 건의(건교부) • 공동합의문 채택 - 기존노선(새만금~개야도~서천비인)을 장항단지로 변경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방문 건의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활성화(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호안·진입도로사업비 133억원 반영(기획예산처)
금강하구둑 쓰레기 처리공동대처(군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처리비지원 건의(금강수계관리위원회) • 관련기관 수거대책회의(서천·군산·군산해양청·농업기반공사) • 금강주변일제 대청소, 금강쓰레기 수거사업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공동대응 (충남, 익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공동합의문 채택 •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개최 • 백제문화권개발계획변경(안) 양도 공동작성
금강수계 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 (진안,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 지원대상지역 조정건의(금강수계관리위원회) •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보강지시(행자부) - 전북 32명, 충남 28명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공동대응(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선도로망 조기시행 건의 • 사업우선순위 및 투자재원대책 미결정 상태(건설교통부)
무주(내도앞섬)~금산(방우 리)간 도로 확·포장(무주,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치수사업으로 금강전도제 개수공사 착공

□ 도 차원의 협력·제휴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Package관광상품 및 관광벨트 추진 (논산, 익산, 금산, 부여, 진안,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권 관광협의회' 구성 합의 • '백제문화유적권역협의회' 개최, 추진사업 등 협의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 군산) • '중부권금강협의회' 구성 개최, 공동홍보물 제작 등 협의 (금산, 완주, 진안, 무주) • 백제문화권 문화관광 투어 실시
금강 건강마라톤 대회(군산 익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서천~군산간 금강 달리기 대회' 활성화 - 2003.10.3 제2회 대회에서 3천명 참가
문화예술교류공연 (충남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벚꽃 예술제, 진안 마이산벚꽃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익산보석문화축제에 충남국악단 참가 • 한산 모시문화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젓갈축제에 전북 도립국악단 참가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25개소) • 홍보물 공동제작·활용 • 지역간 순환버스운행 합의(노산 양촌-대둔산)
금강하구 철새서식환경 조성(충남, 군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서식환경 조성 - 철새 먹이농장 조성, 흑한기 먹이주기 • 밀렵행위 단속반 구성 및 합동단속 : 2개반 16명 • 금강생태체험현장 운영 - 마서지역에 금강 철새탐조대·금강환경교육센터 운영 - 군산지역에 철새조망대 설치완료(11층 54m)
산불예방 및 진화협조체제 확립(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연접지 산불요인 제거 : 논·밭두렁 소각 • 산불예방 홍보공동 추진 : 서한문, 앰프방송, 차량계도 • 초동진화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 및 상호 감시활동체제 유지 - 진화대 200명, 진화차 12대
악성 가축전염병 공동대처(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시·군간 현지 합동방역대책협의회 개최 •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설치 운영
민간차원의 협력·제휴증진 (충남,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교류공연협의(양도국악단 교류공연) •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교류방안 협의 • 새마을도지회 교류방안 협의

□ 시·군 차원의 협력·제휴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활성화 (군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제1회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개최 -협의안건 : 악성가축전염병 공동대처 방안 등 7건 -연구과제 : 금강하구언 쓰레기 공동처리 -중앙건의 : 금강광역권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협력체제 구축 등 3건
도계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행 확대(완주, 진안, 논산, 금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노선운행합의, 운행계획서 및 동의서 교환(논산·완주) • 3개 노선 연장합의(진안, 금산)
배티제주변공동개발 (완주,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티제 전망대 및 휴게실, 화단조성계획 수립 • 도계안내표지판 설치관련 현장방문 및 추진계획 협의
주천 무릉~남이 대양 도로개설(진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간구간 실시계획 완료 • 전북구간 행정자치부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 군도정비사업 장기계획 수립

□ 지속검토·추진사항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용담댐 물상수원 확보 및 물관리 공동대처(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배분용역 발주
공동조업수역 조정 및 어업질서 협력(군산,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시도해양수산협의회 창립 -공동조업수역 및 어업질서 협력 등 공동관심사 협의 • 충남·전북 해상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3) 협의안건 향후 추진계획

협 력 과 제	향후 추진계획
I. 공동방문단 구성 재건의	
1. 충남·전북간 국도 확 포장사업 공동 대응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사업우선순위 조정 위 해 공조
2. 국도 77호 「군·장대교」 건설	• 건교부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포함시켰 으며,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노력
II. 지속점검 추진	
1.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 호안도로 및 진입도로 1·2호선 공사착수(2004.10) •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고지원방안 강구공동노력
2.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공동 대 응	•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 협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활동 적극전개
3. 「공동조업구역」 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	• 해양수산부 해상경계설정 계획에 따라 지속협의 추 진 • 도계 인근해역에서의 불법어업 단속 등 어업지도 협 력
4.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조기확 정	• 신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양도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속철 분기역을 천안으로 조속결정 촉구
5. 「금강하구둑」 쓰레기 공동대처	• 수면·해역관리기관간 합리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처 리 - 수면(농업기반고상), 해역(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 반처리(군산시, 서천군) • 양 도 공동으로 쓰레기처리비 국고지원 지속건의
6. 「금강수계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 원비율 • 지원대상지역이 확대 조정되도록 공동협력
7. 꽃게 금어기 규정 개정	• 관계법령 개정시 합리적인 금어기 설정 지속건의
8. 남이 건천리 ~운주 산북리간 도로 확·포장	• 양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2003년도 본 예산에 소요사업비 공동반영 추진
9. 군산~서천간 국도 4호선 도로연결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강구

협 력 과 제	향후 추진계획
III. 정상추진	
1.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정비시 안내팜플렛 등 홍보물 공동제작활용 • 대둔산 도립공원 셔틀버스 운행확대 추진 • 대둔산 테마관광코스 공동개발
2. 배티재 주변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계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2004.6-12) • 도계지역 상징물(화합기념비, 전적비소개 등) 지속협 의 • 배티재 전망대 설치 및 주변지역 성역화사업 공동추진
3. 야생조수 보호 공동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군 유기적 감시체계 확대 • 체계적 밀렵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정기회의 개최 (월1회) • 엽구수거 및 먹이주기행상 공동개최(월1회)
IV. 신규건의 및 협력·제휴사항	
1.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공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당초계획대로 이행촉구 및 건의 • 양 지역간 공조를 통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협조 지원당부
2. 군산철새축제 「충남관광홍보관」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축제 기간중 주행사장에 충청남도 또는 서천군의 관광홍보관 설치·협조 • 군산시 철새축제 관련 홍보물에 서천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연계운영하는 홍보방안 강구
3. 부여지역 「문화예술축제」참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대축제 참석 및 한국민속예술제에 전북도립국악단 공연협조 • 양 도민의 관심과 유관기관 단체 등 참여홍보활동 전개
4.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홍보 공동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재배는 금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도 많이 재배하므로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지역을 초월한 인삼엑스포 홍보활동 전개
5. 탑정호 유입쓰레기 저감방안 공동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 쓰레기 적치 및 투기행위 제도·단속 실시 • 행락철에 민·관 합동으로 논산천 및 장선천 대청결 운동 추진
6. 「2004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참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충남지역 소재 자동차관련 기업의 엑스포 참가 노력 • 양 도민의 관심과 유관기관 단체 등 참여홍보활동 전개

자료 : 충청남도, 제4회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 2004에서 재작성.

2) 협력사업의 문제점

(1) 개별사업 위주의 불명확한 공동발전 목표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제휴사업은 지역경제, 교통, 관광 등 주로 지역의 공동관심사 및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어서 공동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자치단체가 협력·제휴했을 경우 발전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과 교류협력하지 않으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사업의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목표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대부분이 개별사업위주로 제시되어 있어서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발전목표가 불명확한 점은 개별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이후의 새로운 협력·제휴사업도 개별사업의 형태로 선정될 수밖에 없어 협력·제휴사업 자체가 파편화되고 분절화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2) 단순한 협력·제휴형태의 사업내용

- 협력·제휴의 방식 및 강도는 단순협력의 형태에서부터, 공공투자 및 지역사회통합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협력·제휴의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 자치단체간 협력·제휴사업의 내용은 국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지원하는 형태, 도 사업의 경우 지도단속,

시설물공동설치, 재원공동부담 등의 형태, 시·군 사업의 경우 행정협의회 구성, 시설물공동설치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 따라서 자치단체간 협력·제휴는 단순협력이나 공동분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공동설치와 이용, 공동투자 단계 등 보다 고강도의 협력·제휴사업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제휴 추진

- 지역간 협력·제휴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충청권 및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관 주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민간차원의 협력·제휴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행정 의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친선교류차원에 한정되고 있다.

(4)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중심의 협력·제휴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서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충청권 및 충남-전북의 협력·제휴사업도 자치단체에서 재정분담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재정이 수반되는 협력·제휴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광역 및 자치단체의 투자재원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재정투자 결정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협력·제휴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미흡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가 양도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협력·제휴사업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그러나 충남의 경우 행정협의회는 기획관실, 충남·전북협력회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에도 협력·제휴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종합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평가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6) 중앙정부 건의위주의 협력·제휴사업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협력·제휴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중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휴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제휴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협력·제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3. 지자체간 성공적인 협력사례 요인분석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성공과 실패요인,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연구원, 2004)

1) 성공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의 선정

-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을 잘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일사업보다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사업이 공동의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 그리고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커서 양보가 곤란한 일발성 대형사업보다는 복수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여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협력의 경험을 학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참여주체의 인식 전환과 리더십

-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참여 지자체의 필요를 바탕으로, 참여주체들이 지역간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지역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특히 지역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행정구역 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한편, 민선단체장의 의향과 리더십에 너무 좌우되지 않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무진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3) 수평적 파트너십과 명확한 역할분담

-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간의 과열경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공동추진을 기본으로 하되 주관 지자체를 운번제로 교체하여 주도권 경쟁을 예방하는 방식의 채택도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의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도 협력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 협력성과의 가시화 및 공유

- 지역간 공동사업으로 얻게 되는 세외수입, 예산절감, 중복 투자 방지 등 편익의 가시화는 발의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장은 물론 담당 실무진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협력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은 차후의 다른 협력사업의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 경쟁요인의 제거와 조정기능의 강화

- 협력사업 추진주체들의 과당 경쟁은 협력사업을 교착상태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사업 발의단계에서 협약서 또는 협의회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동기획단(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협력주체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을 활용한 갈등조정 장치도 필요하다.

6) 제도적 지원

- 중앙정부는 공동사업의 지원,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당사자간 기능 및 역할의 분담과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의 역할은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지자체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 지자체간 협력에 필수적인 재정, 행정 등 지원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역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1)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조직의 설치

- 지역간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광역권발전기획단과 같은 별도조직의 설치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역권발전기획단은 광역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지역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사업추진상 갈등과 분쟁조정, 개발사업간 집행연계와 협력문제, 광역권 개발사업의 집행과 예산확보 등을 위한 종합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획단을 운용함으로써 현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의 계획 수립내용을 재정비하고 실효성을 갖도록 계획 및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주요 혁신주체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실제로 상호 교류-학습-혁신 네트워크라는 지역혁신시스템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지자체간 다양한 행정협력제도의 도입 및 활용

-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제도로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등이 있다. 이들 자치단체간 협의체는 선진국에 비하여 다양성과 신축성이 부족하고, 제도 상호간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행정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광역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공동행정 수요에 대하여 협의기능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과 독립된 상설조직체를 가지는 점에서 광역행정협의회보다는 훨씬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제도로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을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각종 조합, 특별구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의 활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지역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도입되어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약만 가능하여 지역간 공동발전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재정지원

- 지역간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협력계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사업과 지역혁신계정사업 중에서 공동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협력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이 가능하다.
- 다시 말하면,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행정구역별로 추진하는 여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 비해 투자우선순위를 높여주고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간 공동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원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장치의 배분규칙을 조정하여 개별 관할구역을 준거로 추진되는 단독사업을 광역화 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 한편,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특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즉, 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평가 기준을 단독사업과 달리 우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자체의 공동사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함께 지역간 협력사업을 위해 지방채발행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지역간 협력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우선 승인하거나 지방채 발행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인센티브의 적용도 가능하다. 즉, 광역적 파급효과의 확보와 주민편의 제공, 공동발전 추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간 협력법(Interregional Cooperation Act) 제정

- 서로 인접한 지자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지역간 협력법」의 제정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지자체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중복투자와 과도한 경쟁에서 탈피하여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간의 공동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간 협력법」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역간 협력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자체간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5. 충남-전북간 공동협력 방안

1) 공유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제휴방안

- 충남-전북은 금강유역을 공유하고 있다. 금강주변 자치단체간 물이용, 환경, 관광 등의 측면에서 공동이용 및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백제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다. 충남의 공주, 부여와 전북의 익산 등을 백제문화권에 포함되어 동질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백제문화자원의 정비, 복원과 백제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술토론회, 유적 정비, 문화 및 관광행정 등의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 충남-전북은 서해안을 공유하고 있다. 바다자원을 이용한 수산 및 관광자원 공동이용, 새만금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협력 등을 통해 서해안 신산업벨트육성에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다.

2) 문제점 극복을 위한 협력·제휴방안

(1) 지역간 협력·제휴사업에 대한 인식공유

- 지역간 협력·제휴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발전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협력·제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지역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 문제의식이 형성되어야 함(이종화;27)

- 지역간 협력·제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제휴하는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끼리 교류하고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깊게 하고 협력이나 제휴를 추진하려는 의식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신창호; 36).

(2) 민간에 의한 협력·제휴확대 방안 모색

- 주민조직, 지역NGO 등의 협력·제휴를 통해 상대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대하고,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해결 문제를 발견하고 여론화시켜 지방정부에 환원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또한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환원된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제도적 협력·제휴방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축제에 대한 참여 및 공동개최, 지역특산물 공동판매, 청소년·여성단체 교류, 지역NGO간 자매결연, 의회교류, 학술교류, 유관기관 교류사업 등

(3) 협력·제휴를 위한 기금조성

- 현행 ‘남북협력기금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제휴를 위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를 위한 기금의 용도는 시설의 공동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사업재원이 아니라, 주민간 협

력·교류, 문화·학술·스포츠분야 등 협력·교류 기반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4) 협력·제휴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 충남의 경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협의체 관리를 일원화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제휴·협력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협력·제휴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제휴사업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5) 충남·전북간 협력·제휴헌장 제정

- 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며, 수평적 관계에 입각하여 다양한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자치단체 협력·제휴헌장을 제정하여 자치단체간 협력의 기본틀을 형성함
- 헌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공동결정, 공동사업, 행정협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물적교류, 분쟁해소절차의 기본원칙과 의사진행 및 결정의 기본원칙 등을 중요 내용으로 규정하여 자치단체간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¹⁾

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 방안 연구, 1999, pp.237~239.

(6) 충남·전북의 경쟁우위산업의 협력·제휴방안

- 충남과 전북도의 특성에 부합되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진 핵심산업군을 선택하여 특화하고 여타산업은 분업전략을 통해 타지역에 과감히 양보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간 장기적인 공동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양 지역에 유리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1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나타난 충남과 전북의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음.
- 따라서, 충남과 전북은 전략산업을 특화육성하고 각자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과감히 다른 지역에 양보하는 산업간 협력·제휴를 통해 광역권 자급자족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역내분업과 역외교역을 통해 공동의 지역이득을 확대함

구 분	전략산업	주요산업
충 남	전자·정보기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디스플레이 교육센터운영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소재 R&D 집적화센터 설립 • 자동차산업 혁신체계(RIS)구축
	첨단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컨텐츠진흥원 설립 • 영상콘텐츠 Data Bank 센터
	농축산 바이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전 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 첨단기계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고도화 사업
	생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파크 구축사업 •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노 방사선 영상기술 개발사업 •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체험관광상품 활성화사업 •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사업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04.

(7) 새로운 형태의 특별자치단체 도입필요성 검토

-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협력·제휴는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지역협의체는 자치단체장 위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의 참여 제한, 협의사항에 대한 구속력 결여, 협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 결여, 협의체 사무국 기능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프랑스식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나 일본의 광역연합제도(광역행정제도) 등 특별자치단체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의 수가 많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형과 연합형으로 구분
 - 일본은 인구감소, 고령화사회, 시정촌의 행정 및 재정능력 강화를 위해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시정촌합병 등으로 구분

(8) 계획협약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 프랑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획협약제도는 분권화 계획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시되면서 국토 및 지역계획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 계획협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초월하여 자치단체장들이나 의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계획협약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체결되지만,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기업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충남·전북간 협력·제휴사업 가능분야 제안

1) 단순협력·제휴가 필요한 분야

▶ 자치단체 또는 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협력·제휴의 공감대 형성

- 양 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교류, 체험학습교류, 체육 및 스포츠교류, 문화·예술교류, 민간단체 교류
- 양 도 경계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마을 단위의 자매결연 추진
- 도계 및 군계, 면계지역의 휴게소·녹지 및 화단·상징물설치 사업
- 양 도 공무원 교차파견근무, 도의회의원 경험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
- 경계지역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 양 도 지방연구원간의 학술교류 협정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 학생 및 청소년의 home stay

2) 공동계획 및 자원공동이용 필요한 분야

- ▶ 기능적인 연계지역간 공동발전방안 모색, 광역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역전략계획 및 구조계획수립
- ▶ 산림, 하천, 경관 및 문화자원의 보전과 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간 협력·제휴로 환경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충남-전북의 협력·제휴의 실천성확보를 위한 공동계획 수립
 - 사회간접자본, 관광, 문화, 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제휴방안 모색
- 금강주변 충남-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
 - 금강에 인접한 자치단체들간의 협력·제휴방안을 주요내용
- 금강의 물대책과 환경관리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통해 하나의 유역생태권으로 복원·보전
 - 상호 협력적 경제권 및 사회문화권, 수변관광권 형성
 - 금강유역발전협의체 구성 및 금강기금 창설 등
- 충남-전북간 공동관광상품 및 관광루트 개발방안
 - 관광분야에 한정하여 관광상품, 관광루트, 관광마케팅 등

- 의 협력·제휴방안 모색
- 강경-군산간 금강호의 관광상품 활용을 위한 협력·제휴방안
 - 탁류의 무대인 강경과 군산을 연결하는 금강호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제휴방안 모색
 - 금강호 주변 탐조관광을 공동으로 추진
 - 금산군-무주군의 '신활력지역'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 모색
 - 금산-무주군의 관광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제휴방안
 - 금신인삼축제와 무주반딧불이 축제의 공동개최방안 모색
 - 금산-무주관광의 공동마케팅 추진
 - 금산-무주연계 버스투어패키지 개발
 - 금산 및 무주특산물 매장의 공동설치 및 판매
 - 관광홈페이지 공동개설 및 운영 등
 - 백제문화권 협력적 정비와 보존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통한 백제문화유적의 복원·보존
 -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및 문화관광산업의 발전방안
 - 백제문화권 보존지구 및 개발지구 지정
 - 백제문화권 관광루트 개발 등

3) 광역시설 공동 설치·운영이 필요한 분야

▶ 규모의 경제성 차원에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위한 기획조정위원회의 설치
 - 협력·제휴사업 구상 및 기획단계에서 실무차원의 공동기획·조정
 - 지방자치단체, 지역NGO, 지역언론, 지방연구원, 상공회의소 등 공동참여
- 광역 및 지역간 연결도로, 교량의 확장 및 신설 등 SOC시설 확충
- 충남-전북의 관광개발을 위해 공동투자하여 광역지방공사 설립방안 검토
- 수해방지시설의 공동설치(하천, 공동조립 등)
- 산업 및 주거단지의 공동개발 등

7. 협력·제휴사업의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방안

- 충청남도과 전라북도간의 협력·제휴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가 주도하는 형태로 지역간 협력과 공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의의 성격상 느슨한 형태의 협력·제휴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남-전북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 협의회 산하에 부문별 실무추진위원회, 사무국기능 강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협력·제휴의 집행력을 확보한다.
- 장기적으로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남·전북행정협의회’를 포괄하는 ‘금강권광역발전전담기구’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